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	----

제출일자 : 2007. 4. 19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및 공포(2007.1.11)와 관련하여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 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승인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6609(2006.10.31)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라. 입법예고 : 2007. 3. 2 ~ 3. 22(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기타 : 표준 조례안 시달(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6609, 2006.10.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 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 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